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226

제출년월일 : 1997. 6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음성지역의 각종 공단조성 및 도시규모 확대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음성소방서를 신설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제2조관련 "별표"(충청북도소방서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)에 음성소방서를 신설하고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4 - 114로 하고 관할구역은 음성군 일원으로 하며, 충주소방서 관할구역에서 음성군 일원을 삭제함.

○ 소방서장 직급규정을 삭제

□ 근거법령

○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

○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□ 따로붙임

○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○ 참고자료(근거법령) 1부

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관련 "별표"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동조의 본문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별표중 충주소방서 및 음성소방서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사항은 1997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.